

대한건축사협회 19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공고

일 시

1999년 3월 26일(금) 10시

장 소

본협회 대강당

게시판 bulletin board

1999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공고

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9년 2월 26일
건설교통부장관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구 분	건 축 사 예 비 시 험
1. 응 시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 대상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.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3.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4.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○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건축사시험 대상자
2.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장소	<p>가. 시험과목: 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계획 – 객관식 선택형</p> <p>나. 시험일자: 1999년 5월 9일</p> <p>다. 시험장소: 1999년 4월 27일 각 시.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</p>
3.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	<p>가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: 1999. 3. 15 ~ 3. 20 (09:00 ~ 18:00, 단, 토요일은 13:00까지)</p> <p>나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: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.도건축사회</p> <p>• 서울건축사회: (02) 581-5715~8 • 대구건축사회: (053) 753-8980~5 • 광주건축사회: (062) 521-0025~6 • 울산건축사회: (052) 266-5651 • 강원건축사회: (0361) 254-2442 • 충남건축사회: (042) 256-4088 • 전남건축사회: (062) 365-9944 • 경남건축사회: (0551) 246-4530~3</p> <p>• 부산건축사회: (051) 633-6677 • 인천건축사회: (032) 437-3381~4 • 대전건축사회: (042) 485-2813~7 • 경기건축사회: (0331) 247-6129~30 • 충북건축사회: (0431) 223-3084~6 • 전북건축사회: (0652) 251-6040 • 경북건축사회: (053) 744-7800~2 • 제주건축사회: (064) 752-3248</p>
4. 제출서류	<p>가. 출원시 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(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): 1부• 컬러사진(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영함판): 2매 (응시원서 부착 제출)• 응시수수료: 23,000원(응시원서대: 2,000원 별도) <p>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응시표사본, 주민등록표초본, 학력증명서 각 1부• 경력증명서 1부(단, 해당자에 한하여,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)
5. 합격예정자 발 표	<p>가. 합격예정자 발표: 1999년 5월 20일 11:00 시.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</p> <p>나.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: 1999. 5. 26 ~ 5. 29 (단, 토요일은 13:00까지)</p> <p>※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.</p>
6. 응시자 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(99.5.8)까지로 하며, 경력과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○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단, 응시표를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(여티증명서) 및 반영함판 사진 2매를 지참하고 시험시행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)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(09:30분)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,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○ 시험실내에서는 흡연, 담화,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,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○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.○ 응시원서상의 기재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답안지는 열람, 확인할 수 없습니다.○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○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, 건축사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○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○ 기타 자세한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 바라며,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(581-5711~4)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(500-4131)로 문의 바랍니다. <p>※ 본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</p>